

대구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36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36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2039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D

변론 종결 2016. 11. 16.

판결 선고 2017. 1. 25.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2039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제1심 공동피고(이하 '공동피고'를 생략한다) B와 피고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제1심 공동피고(이하 '공동피고'를 생략한다) B, 제1심 공동피고(이하 '공동피고'를 생략한다) C을 상대로 하여 각 구상금 청구,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휴먼(이하 (이하 '휴먼'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A, B, C에 대한 각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기각), 원고의 피고 및 휴먼을 상대로 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중방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의 실제 운영자인 B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A의 갹생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B이 피고와 사이에 2014.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올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2014. 11. 8.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2. 30.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5,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A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차용금을 A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2014. 11. 8.부터 약 1개월 20일이 지나 2014. 12. 26.에서야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A의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장래아

판사진원두

별지